#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07

발의연월일: 2021. 1. 25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강기윤 · 권명호

권성동 • 박대수 • 박덕흠

서범수・유경준・이종배

이채익 • 최승재 • 최형두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,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%가 소재하고 있으며,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.

이에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제55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 중 "법인세는"을 "법인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(이하 이 조에서 "본사"라 한다)의 소재지에 따라"로, "다음 표의"를 "해당"으로 하고, 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내국법인의 본사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에 있는 경우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0)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3천억원 초과	65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25)

2.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5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10)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19억9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)
3천억원 초과	355억9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제55조(세율) ① 내국법인의 각
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<u>법인</u>
<u>세는</u>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
에 <u>다음 표의</u> 세율을 적용하여
계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
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
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
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
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
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
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다)
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<u>과세표준</u>	<u>세율</u>
<u> 2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<u>2억원 초과</u> <u>200억원 이하</u>	2천만원+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0)
200억원 초과       3천억원 이하	39억8천만원+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2)
3천억원 초과	655억8천만원+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5)

제55조(세율) ①
법인세
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내국법인
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(이하 이
조에서 "본사"라 한다)의 소재
지에 따라
<u>해당</u>
<삭 제>

안

개

정

<신 설>

1. 내국법인의 본사가 「수도권 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에 있는 경우

<u>과세표준</u>	<u>세율</u>
<u> 2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<u>2억원 초과</u> <u>200억원 이하</u>	2천만원+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0)
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	39억8천만원+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2)
3천억원 초과	655억8천만원+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5)

2.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밖에 있는 경우

<신 설>

과세표준	세율
<u> 2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5
<u>2억원 초과</u> <u>200억원 이하</u>	1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0)
200억원 초과       3천억원 이하	19억9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2)
3천억원 초과	355억9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)
② (현행과 같음)	

② (생 략)